

○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“재검토기한”을 개정(안 제50조)

## 국도유지·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국도유지·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국도유지·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5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